

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,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,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(제20조제1항 관련)

사업의 종류	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	보건관리자의 수	보건관리자의 선임방법
1. 광업(광업 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)	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	1명 이상	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.
2. 섬유제품 염색,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			
3. 모피제품 제조업	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2천명 미만	2명 이상	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.
4. 그 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(모피 액세서리에 한정한다)			
5. 모피 및 가죽 제조업(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은 제외한다)	상시근로자 2천명 이상	2명 이상	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, 같은 표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6.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			
7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		
8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; 의약품 제외			
9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		
10.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		
11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		
12. 1차 금속 제조업			
13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; 기계 및 가구 제외			
14.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		
15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		
16. 전기장비 제조업			
17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		

<p>18.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</p> <p>19. 가구 제조업</p> <p>20. 해체, 선별 및 원료 재생업</p> <p>21. 자동차 종합 수리업, 자동차 전문 수리업</p> <p>22. 제8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을 제조하는 사업과 그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특히 보건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</p>			
<p>23. 제2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</p>	<p>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</p>	<p>1명 이상</p>	<p>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.</p>
	<p>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</p>	<p>2명 이상</p>	<p>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.</p>
	<p>상시근로자 3천명 이상</p>	<p>2명 이상</p>	<p>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, 같은 표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</p>
<p>24. 농업, 임업 및 어업</p> <p>25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</p> <p>26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 재생업(제20호에 해당하</p>	<p>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천명 미만. 다만, 제35호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5천</p>	<p>1명 이상</p>	<p>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.</p>

<p>는 사업은 제외한다)</p> <p>27. 운수 및 창고업</p> <p>28. 도매 및 소매업</p> <p>29. 숙박 및 음식점업</p> <p>30. 서적,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</p> <p>31. 방송업</p> <p>32. 우편 및 통신업</p> <p>33. 부동산업</p> <p>34. 연구개발업</p> <p>35. 사진 처리업</p> <p>36.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</p> <p>37. 공공행정(청소, 시설관리,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)</p> <p>38.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·중등·고등 교육기관, 특수학교·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(청소, 시설관리,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)</p> <p>39.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</p> <p>40. 보건업</p> <p>41. 골프장 운영업</p> <p>42.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(제2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)</p> <p>43. 세탁업</p>	<p>명 미만으로 한다.</p> <p>상시 근로자 5천명 이상</p>	<p>2명 이상</p> <p>1명 이상</p>	<p>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, 같은 표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</p>
<p>44. 건설업</p>	<p>공사금액 800억원 이상(「건설산업</p>	<p>[공사금</p>	<p>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</p>

<p>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의 종합공사 를 시공하는 업 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 목공사에 속하 는 공사의 경우에 는 1천억 이상)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</p>	<p>액 800억 원 (「건설산업기 본법 시행령」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 하는 업 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 목공사에 은 1천억 원)을 기 준으로 1,400억 원이 증 가할 때 마다 또 는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 명씩 추 가한다]</p>	<p>하는 사람을 선임 해야 한다.</p>
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